

인천지방법원 2024. 4. 17 선고 2023가단27870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채무자 B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C

피 고 D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상우

원고 보조참가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스엠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육삼신

변 론 종 결 2024. 3. 6.

판 결 선 고 2024. 4. 17.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3,849,039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0. 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E은 2015. 12. 18. 별지 1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E은 2016. 5. 20. 사망하였다. E의 상속인들로는 배우자인 피고와 자녀들인 B, F, G가 있었는데, E의 상속인들은 2020. 2. 10.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소유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 피고는 2020. 2.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B는 2023. 6. 29. 파산선고 결정을 받았고, 원고는 같은 날 B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 보조참가인은 B에 대한 금전채권자로서 파산채권자이다. 그런데 B는 2020. 2. 10.

상속재산분할협의로써 이 사건 부동산 중 2/9 지분을 피고에게 넘겼는바, B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20. 2. 10.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약(이하 '이 사건 분할협약'이라 한다)은, B가 파산채권자인 원고 보조참가인을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로서 부인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이 사건 분할협약의 결과는 별지 2와 같은 이유1)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 한편 원고 보조참가인이 2021. 12. 9.을 기준으로 B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채권액은

55,372,493원이다. 그리고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인 5억 250만 원에서, 2015. 12. 28. 설정된 H 주식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인 235,179,323원과, 2016. 5. 3. 설정된 I 명의의 근저당권2)의 피담보채권액인 7,000만 원을 각각 공제한 197,320,677원에 B의 법정상속분인 2/9를 곱한 금액은 43,849,039원이다. 위 55,372,493원과 위 43,849,039원 중에서 작은 금액은 위 43,849,039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반환으로 위 43,849,03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의 결과는 별지 2와 같은 이유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가액반환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B의 다른 금전채권자로서 주식회사 J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소송에서, 이 사건 부동산 중 2/9 지분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허용하는 내용, 즉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허용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 1. 11. 선고 2020가단230214 판결, 2023. 7. 6. 확정됨). 그리고 원고가 내세우는 별지 2와 같은 이유는 이 사건 분할협의의 결과에 대하여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는 점과 별다른 관련이 없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분할협의의 결과에 대하여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원고는 원물반환으로 청구를 변경할 의사가 없고, 가액반환 청구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제6회 변론조서 참조).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수밖에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3)

판사 윤영석

별지

- 1) 원고의 2023. 10. 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5~6쪽 참조.
- 2) 후에 확정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K 명의의 근저당권으로 이전됨.
- 3)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면, 주식회사 J는 이 사건 부동산 중 2/9 지분을 피고에게서 B에게로 이전시키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아서, 결국 이 사건 부동산 중 2/9 지분의 범위를 초과하는 이중집행의 문제가 발생할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된다.